

제28.3호

### 행정명령

#### 뉴욕주 비상 사태 선포

공중보건서비스법(Public Health Services Act) 362조 및 365조(42 U.S.C §§ 362 및 365, 2021년 8월 2일 미 질병통제센터(United States Center for Disease Control, CDC) 국장령에 따른 42 C.F.R. § 71.40 시행 규정)에 따라 *격리가 필요하며 전염가능한 질병이 존재하는 곳에서 온 사람에 대한 공중 보건 평가 및 권리 중단 명령*(“42장 명령”)이 발령되었기 **때문에**,

42장 명령이 캐나다 또는 멕시코(출신국에 관계 없이)에서 미국으로 입국한 자이며 입국항 또는 미국 국경 또는 해안 국경 인근 국경 통제소 등 분리된 장소로 입국할 수 있었던 자인 “보장받는 비시민”의 입경을 막았기 **때문에**,

42장 명령의 실행 이후에도 올해 초 몇 달 동안 뉴욕시와 뉴욕주에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이민자가 다수였으며, 5월 기준 뉴욕시의 경우에만 남쪽 국경에서 36,738명의 이민자가 현재 임시 주거 중이며, 2023년 1월부터 이러한 숫자가 12,279명이 증가 하였으며, 지난 주에만 추가 1,578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2023년 5월 11일 42장 명령이 만료된 이후, 뉴욕시에서만 지난 몇 주 동안 각각 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포함하여 수천 명이 추가로 뉴욕에서 대피소를 찾았기 **때문에**,

뉴욕주 및 기타 뉴욕주 내 지방 정부로서 이민자 수천 명의 주거와 기타 기본적인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인도적 요구를 지원할 인프라, 시설, 자원이 부족한 경우 연방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뉴욕주와 뉴욕시에서 쉼터를 찾는 이민자의 수가 늘어나는 추세가 이미 존재하는 대규모 인도적 사태를 악화시키고 지방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을 정도의 비상사태를 초래하여 보건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생명이나 자산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본인 **KATHY HOCHUL** 뉴욕주 주지사는 뉴욕주 헌법 및 행정법 제2-B조 제28항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 행정명령 28호 및 후속 조항에 선언된 주 재난 비상 사태를 2023년 8월 25일까지 연장하며 이로써, 행정명령 28호 및 후속 조항에 포함된 조건, 약관 및 효력 정지를 이어갑니다.

2023년 7월 26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합니다.

주지사 비서